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109
----------	-----

提出年月日 : 1992. 3. 30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大田直轄市史編纂의 臺本 發刊에 이어 分類史의 深層研究를 위한 “한밭의 人物誌” 發刊 및 地域文化暢達에 寄與할 “大田文化誌” 定期刊行과 市史의 補正編纂計劃에 따라 同業務를 圓滑하게 推進할 專門人力을 補強하고, 常任委員 및 研究員의 報酬를 他直轄市 水準으로 改善하고자 함.

2. 主要骨子

- 가. 機能에 市史編纂業務以外에 鄉土文化 發展을 위한 研究·編纂活動機能을 賦與함(案 第2條 第2號)
- 나. 研究員을 “1名”에서 “2名”으로 變更하고 先任研究員과 研究員으로 區分하여 市長이 委嘱하도록 함(案 第6條)
- 다. 實費辨償 基準을 別表로 規定하여 號俸을 調整하고 精勤手當 支給率 變更 및 職務手當 支給等 處遇를 改善하고자 함(案 第10條)

3. 參考事項

- 가. 他直轄市 處遇 比較表
- 나. 實費辨償 基準 對比表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사발전을 통한 시정홍보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시정홍보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편찬활동”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연구원 1명”을 “2명”으로 하며 연구원 2명을 두며, 다음에 “상임위원은”을 삽입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연구원은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 제2항중 “문화예술계장”을 “문화계장”으로 한다.

제10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상임위원과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준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의해 위촉된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실비변상기준

구 分	여 비	월수당	기말상여금	정근수당	직무수당
상임위원	4급 공무원 에 상당한 여비	4급 공무원 10호봉 상 당액	월급여의 400%	지방공무 원 정근 수당지급 규정준용	지방공무 원 직무 수당 지 급 규정 준용
설임연구 위원	5급공무원 에 상당한 여비	5급공무원 7호봉 상 당액	"	"	"
연구원	6급공무원 에 상당한 여비	6급공무원 7호봉 상 당액	"	"	"

新 舊 條 文 對 照 表

現 行	改 正
<p>대전직할시사편찬위원회조례</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자료의 조사 연구 2. 시사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및 향토 문화의 계승발전 3. 시정 각 분야의 자료정리 및 보존 4. 기타 시사편찬에 따른 사항 <p>제6조(상임위원 및 연구원) ① 시사편찬의 운영, 자료수집, 조사, 정리 및 연구를 위해 상임위원 1명과 <u>연구원 1명</u>을 두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p> <p>② <u>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u> 시장이 위촉한다.</p> <p>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p> <p>② <u>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과장 이 된다.</u></p>	<p>대전직할시사편찬위원회조례</p> <p>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시정홍보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편찬 활동</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p>제6조(상임위원 및 연구원) ①</p> <p>..... 2명 ..</p> <p>..... <u>상임위원은</u></p> <p>.....</p> <p>② <u>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u> 시장이 위촉하며, 연구원은 <u>선임 연구원과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위촉한다.</u></p> <p>제9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문화계장</u></p>

現 行	改 正
<p>제10조(실비변상)</p> <p>③ 상임위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일반공무원의 4급7호봉 기준에 상당하는 월수당을, 연구원에게는 6급 5호봉 기준에 상당하는 월수당을 지급 하며, 연간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 하는 기말수당과 100%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상임위원과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p>
<p>(신 설)</p>	<p>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규정에 의해 위촉된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p>

現 行		改 正				
(신설)		(별표)				
상임위원	여 비	임수당	기말상여금	정근수당	직무수당	
4급 공무원 에 상당한 여비	4급 공무원 10호봉 상 당액	4급 공무원 400%	월급여의 7호봉 상 당액	지방공무 원 정근 수당처급 금정준용	지방공무 원 직무 수당 지 급 규정 준용	
설립연구 위원	5급공무원 에 상당한 여비	5급공무원 7호봉 상 당액				
연구원	6급공무원 에 상당한 여비	6급공무원 7호봉 상 당액				

별지		별지	
위 촉 장	위 촉 장	성명	성명
.....
.....
.....

년 월 일	
대 전 직 할 시 장	.

3. 參考事項

가. 타직할시 상임위원등 처우 비교표

시 별 구 分		대 전	부 산	대 구	인 천
정 원	상임위원 연 구 원 보 조 원	1 1 1	1 1 1	1 1 1	1 1
실 비 변	월수당 상임 연구 보조	4급 7호 6급 5호	4급 13호봉상당 6급 7호봉상당 일용직 상당	4급 10호 6급 7호 일용직 상당	4급 10호 6급 10호
상 기 준	기말 상임 상여금 연구 보조	월급여의 400% "	월급여의 400% "	지방공무원상여 금 지급규정준용 "	지방공무원상여 금 지급규정준용 "
	정근 상임 수당 연구 보조	월급여의 100% "	월급여의 100% "	월액수당 200% "	지방공무원상여 금 지급규정준용 "
	직무 상임 수당 연구 보조		지방공무원직무 수당지급규정 "	지방공무원직무 수당지급규정 "	지방공무원직무 수당지급규정 "
	여비 상임 연구 보조	4급 공무원상당 "	3급공무원상당 5급 기능직10등급	4급공무원 "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준용

4. 實費辦償基準 對比表

區 分		現 行	改 善
月 手 嘗	常任委員 先任研究員 研究員	4級7號俸 相當額 新 設 387,500	4級10號俸 相當額 5級 7號俸 相當額 6級 7號俸 相當額
期 末 手 嘗	常任委員 先任研究員 研究員	月給與의 400% 新 設 月給與의 400%	前 斗 同一 月給與의 400% 前 斗 同一
精 勤 手 嘗	常任委員 先任研究員 研究員	月給與의 100% 新 設 月給與의 100%	地方公務員 精勤手當支給 規程準用 " " "
職 務 手 嘗	常任委員 先任研究員 研究員	新 設 " " " "	地方公務員 職務手當支給規程準用 " " "

심의의결서

김의필
1991. 2. 21.
대전직할시
시정조정위원회

안건: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개정

주문: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제2조(기능), 제6조(상임의원 및 연구원)와 제9조(간사와 서기), 제10조(실비변상)를 상정안과 같이 개정키로 함.

사유: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에 연구편찬활동 기능을 부여하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키 위한 전문인력의 보강과 함께 이들의 처우를 개선코자함

위와 같이 의결한다.

1992. 2. 21.

대전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시장 張義鎮	
부위원장	기획관리실장 朴永睦	
위원	감사실장 領聖浩	위원 도시계획국장 李秉讚
"	내무국장 尹正雄	환경녹지국장 賈基山
"	재무국장 宋寅鳳	건설주택국장 鄭春熙
"	보사국장 李世鎮	민방위국장 李初榮
"	가정복지국장 李文玉	소방본부장 李學起
"	지역경제국장	공보관 林榮鎮
"	교통관광국장 金容官	기획담당관 朴城孝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2年 4月 10日
内務委員會

I.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署 提案者 : 1992年 3月 30日 大田直轄市長

나. 回 附 日 字 : 1992年 4月 1日

다. 上 程 日 字 :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内務委員會(1992. 4. 8)
上程, 審議, 議決

II. 提案說明 要旨(提案說明者 : 内務局長)

1. 提案理由

大田直轄市市史編纂의 臺本 發刊에 이어 分類史의 深層研究
를 위한 “한밭의 人物誌” 發刊 및 地域文化 暢達에 寄與할
“大田文化誌” 定期刊行과 市史의 補正編纂計劃에 따라 同業
務를 圓滑하게 推進할 專門人力을 補強하고, 常任委員 및 研
究員의 報酬를 他直轄市 水準으로 改善하고자 함.

2. 主要骨子

- 가. 機能에 市使編纂業務以外에 鄉土文化 發展을 위한 研究 · 编纂活動機能을 賦與함 (案 第2條 第2號)
- 나. 研究員을 “1名”에서 “2名”으로 變更하고 先任研究員과 研究員으로 區分하여 市長이 委囑하도록 함 (案 第6條)
- 다. 實費補償 基準을 別表로 規定하여 號俸을 調整하고 精勤手當 支給率 變更 및 職務手當 支給等 處遇를 改善하고자 함 (案 第10條)

III. 專門委員 檢討 要旨 (專門委員 : 安鍾贊)

本 改正 條例案은 大田直轄市 市史編纂委員會의 機能을 擴大하여 市史編纂과 鄉土文化誌 編纂等을 追加하는데 따른 專門人力 補強 事項이 되겠음.

改正되는 主要 内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機能으로써 現行보다 이를 擴大시켜 “市史發刊을 통한 市政弘報 및 鄉土文化의 繼承 發展”을 研究, 編纂 活動까지로 그 機能을 擴大하였고(案 第2條)

둘째, 人力增員으로써 機能 擴大로 인한 人力 補強을 위하여 現行研究員 1名을 2名으로 增員하여 選任研究員을 두도록 하였으며 (案 第6條)

셋째, 處遇改善에 관한 事項으로써 大田直轄市 市史編纂委員會 條例 第10條 規定의 現行 實費 辨償基準을 一部 調整하여 常任委員 및 研究員에 대한 處遇를 改善코자 하는 것임. (案 第10條)

이는 우리고장 鄉土文化의 繼承發展을 위한 꾸준한 研究와 아울러 歷史誌 發刊을 통한 市民으로써의 爰持는 물론 愛鄉心 鼓吹面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事業으로 豫見되는 바, 本 事業의 活潑한 研究와 活動을 위하여는 이에 必要한 人力 補強이 切實히 要求된다고 思料됨.

IV. 質疑 및 答辯 要旨 : 省 略

V. 討論要旨 : 省 略

VI. 審查結果 : 原案 可決

VII. 體系 字句 整理 內容 : 없 음

VIII.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